

보도자료

- 제공일 : 2005. 6. 10.
- 제공처 : 농림부 축산물위생과
- 과 장 : 석 희 진
- 서기관 : 이 상 진
- 전 화 : 02-500-1930

이 자료는 2005년 6월 11일 조간 이후에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

제목 : 축산물 안정성 제고를 위한 검사원 신규 배치

- 농림부는 지난해 7월 29일 발표한 「축산물 위생·안전성 제고 종합대책」에 따라 도축검사원(Inspector) 100명을 채용하여, 금년 6.15일 전국 110개 도축장 중 우선 소를 도축하는 86개소에 배치한다고 밝혔다.

- 새로 배치하는 도축검사원의 주요임무는 도축장의 도축라인에서 자자체 소속 도축검사관(공무수의사)이 수행하는 해체된 내장, 지육, 머리를 직접 검사하여, 축산물가공처리법 시행규칙 제9조 3항 관련 별표3의 「도축하는 가축 및 식육의 검사기준」에 따라 합격여부를 판정하는 업무를 돕는 것이다.
 - 도축장에 출하된 소·돼지 등 가축에 대한 생체검사는 지자체 소속 공무수의사가 실시하여 도축허용여부를 결정
 - * 생체검사항목 : 구제역·돼지콜레라 등 49개 질병검사
 - * 해체검사항목 : 복막염·간경화·신장농양 등 32개 병변검사

- 도축검사원제도는 축산물가공처리법상의 도축검사 전문 인력인 검사관(공무수의사)이 미국·유럽 등의 경우보다 크게 부족하여 도입됐다.
 - 도축검사원은 「특수법인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(본부장 정영채)」 소속으로 임용후 시·도 축산물위생검사기관(가축위생시험소)에 파견된다.

- 우리나라는 미국·유럽 등 외국에 비하여 검사 인력이 부족한 실정임 (우리나라 :도축장당 1.15명, 선진국 8-10명 수준)
- 농림부는 이번에 채용·배치되는 도축검사원은 대학 축산관련학과 등을 졸업한 **286명이 응시하여 서류전형, 필기시험(가축위생학, 축산학개론, 국민윤리, 축산물가공처리법 등 4과목), 면접시험**을 거쳐 선발된 우수 요원이라고 강조하고, 매년 검사원을 증원하여 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.
- 그동안 선발된 이들 도축검사원에 대하여 농협중앙회 소속 축산물위생교육원(경기 안성소재)에서 금년 4.11부터 6.3일까지 **8주 동안 해부학·병리학·미생물학 등 기초과목과 도축검사실습 등 응용과목**을 교육시킨 후 금번에 도축장에 배치된다.
- 농림부는 이와 함께 도축검사관 (지자체 소속 공무원의사)의 인력 증원이 필수적이라고 보고, 지난해 7.29자로 축산물가공처리법 시행령 제17조의 2 「별표 1」을 개정하여 도축장에서 검사관이 **1일 동안 검사할 수 있는 가축의 수에 따라 검사관을 배치함으로써** 선진외국 수준의 도축검사를 강화하고 있다고 덧붙였다.

<참고 : 검사관의 기준 업무량>

- 검사관 1인이 근무하는 경우 : 소30두 이하, 돼지300두이하
- 검사관 2인이 근무하는 경우 : 소60두 이하, 돼지600두이하
- 검사관 3인이 근무하는 경우 : 소90두 이하, 돼지900두이하로 하되, 검사관 1인이 추가될때 소60두, 돼지 600두를 각각 추가하여 산정